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가 현실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500	750	1,000
나.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500	750	1,000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배출량보고서 또는 배출량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500	750	1,000
라.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상쇄의무 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500	750	1,000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250	375	500
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 등을 거부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500	750	1,000